

[양식 제7호] <개정 2003.9.17>

이혼(친권행사자 지정)신고서
(년 월 일)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	남 편(부)				아 내(처)					
① 이혼당사자	본적	호주 및 관계		의		호주 및 관계		의			
	주소					주소					
	성명	한글	㉠(서명 또는 무인)				한글	㉠(서명 또는 무인)			
		한자					한자				
	본(한자)			전화			본(한자)			전화	
	주민등록번호	-				주민등록번호	-				
② 부모	부	본적					본적				
		성명					성명				
	모	본적					본적				
		성명					성명				
③	① 복적할가							호주			
	② 부흥할가										
④	① 법정분가장소					일가창립원					
	② 일가창립장소										
	③ 부흥장소										
⑤기 타 사 항											
⑥재판확정일자		()		년 월 일		법원명		법원			
⑦ 친권행사자 지정	미성년자인 자의 성명										
	주민등록번호	-				-					
	친권행사자	①부	지정일자	. . .		①부	지정일자	. . .			
	②모	원 인	① 협의	② 재판	②모	원 인	① 협의	② 재판			
⑧ 증인	성명	㉠(서명 또는 무인)		주민등록번호		-					
	주소										
	성명	㉠(서명 또는 무인)		주민등록번호		-					
	주소										
⑨제출자	성명					전화·이메일					
	주소					이혼당사자와의 관계		의			

※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⑩실제결혼연월일	년 월 일부터 동거	⑪실제이혼연월일	년 월 일부터 별거
⑫20세미만자녀수	명	⑬이혼의 종류	①협의이혼 ②재판상 이혼
⑭이 혼 사 유	① 배우자 부정 ② 정신적·육체적 학대 ③ 가족간 불화 ④ 경제문제 ⑤ 성격차이 ⑥ 건강문제 ⑦ 기타		
⑮최 종 졸업 학교	남편	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이상	처
⑯직 업	남편		처

작성 방법

※ 신고서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①란 :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부·처를 구분표시하여 국적을 기재합니다.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②란 :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·양모의 본적·성명을 기재하며, () 하고 양부·양모임을 표시합니다.
- ③란 :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합니다.
·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합니다
·복적해야할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친가를 부흥(復興)하려는 경우에 그 부흥할 가를 기재합니다.
- ④란 :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합니다.
·혼가를 떠나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.
·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장소 및 창립의 원인을 기재합니다.
·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를 부흥(復興)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.
- ⑤란 : 아래 사항 및 호적의 기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·수반입적자(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(家)에 입적할 자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(한글, 한자 병기), 생년월일, 부모성명, 이혼당사자와의 관계
·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,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
·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, 서명(또는 날인) 및 생년월일
·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혼가를 떠나는 자의 친가복적의 경우 호주의 성명 및 본적, 친가부흥의 경우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, 일가창립의 경우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등, 각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
- ⑥란 : 이혼판결(화해, 조정)의 경우에만 기재하고,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·조정성립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“인지판결확정일자”아래의 ()안에 “조정성립”, “조정에갈음하는 결정확정” 또는 “화해성립”이라고 기재하고, “년월일”란에 그 성립(확정)일을 기재합니다.
- ⑦란 :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민법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“1협의”에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“2결정”에 “○”으로 표시합니다.
- ⑧란 :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- ⑩란, ⑪란 :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- ⑮란 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○표시를 합니다.
(예 : 대학교 3학년 중퇴 → 4고등학교에 ○표시)

첨부 서류

1. 협의이혼 :
·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.
·복적할 가(처의 친가)의 호적등본 1부(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함).
2. 재판이혼 :
·판결(조정조서, 화해조서)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·복적할 가(처의 친가)의 호적등본 1부.
3.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
·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.
·패소한 피고가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) 1부.
·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.